

『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(2019. 7. 1. 시행)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함에 따라 「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」의 ‘시각장애등급 4급’에 대한 조문을 ‘장애정도’로 변경하여 자동차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관련 조문 정비(제2조)
 - ‘시각장애등급 4급’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‘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변경
 - 좋은 눈의 시력의 0.06 초과 0.1 이하인 사람
 -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으로 2019. 7. 1.부터 기존 ‘장애등급’이 폐지되고 ‘장애정도’의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문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의 용어를 일치시켜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,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